

第53回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 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1月15日(水) 11時 0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7面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14面

(11時00分 開議)

○委員長 玄壽漢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세상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바쁜 시기입니다마는 올해에도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안전을 다루기에 앞서 본 안전 외 다른 질의 같은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정질의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질의를 해주시고 본 안전에만 짧은 시간내에 모든 심의를 마쳐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案係長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案係長 議案係長 洪柱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

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議案係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안전에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각 국장님들이 그대로 배석한 가운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03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保健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안녕하십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연방에서 시작한 디프테리아가 만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디프테리아 예방사업지침에 따라서 여권과가

신설된 우리 구의 보건소에서 독립국가연합 등 디프테리아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유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유료접종인데 0.5cc를 500원에 저희 보건소에서 받으려고 하는 수가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제출일자 : 1995. 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 사유

보건복지부 디프테리아 긴급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민건강보

호를 위해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유료)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독립국가연합 등 디프테리아 유행지역으로 출국하는 16세이상 성인에 대한 디프테리아 임시 예방접종(유료 : 500원)을 실시코자 함.

3. 관계 법령

－ 보건소법 제8조 제1항, 제2항.

－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제2항.

4.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별표】 수수료액표”중 3.유료접종란중 종목란 “바. 렙토스피라증” 다음에 “사. 디프테리아”란을 신설한다.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유료접종	사. 디프테리아	0.5ml	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수수료 액표					【별표】 수수료 액표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유 료 접 종	가. ~ 바 (생략)				3. 유 료 접 종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디프 테리아	0.5ml	500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委員長 玄壽漢 李星世 保健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10월 1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鍾路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서 금번 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고 있어서 동지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되어 동접종 실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골자는 보건소수가조례 중에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

을 규정한 제2조제2항 별표 규정에 아래사항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료접종 디프테리아의 수가를 500원 징수하는 것으로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전염병의 종류와 예방조치, 수수료 징수근거 등에 대하여 관계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전염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에 디프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종은 백일해, 말라리아 등입니다. 제3종은 결핵 등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육·해·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귀속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법 제8조 사항입니다. 수수료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 8월 28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행지역은 독립국가연합 전역 및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환자 발생은 4만 7,802명으로 사망률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접종수수료는 500원으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접종증명서 발행은 담당의사가 영문으로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종약 배정은 약 200명 분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접종은 민간시설은 구 고려병원에서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사항입니다.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그래서 금번에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디프테리아는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16세 이하는 의무적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자 16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종전까지는 발행사항이 없는 관계로 유료접종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서 수가조례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유료접종 방침에 따라서 수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星世 保健所長님과 관계공무원은 답변서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哲柱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哲柱委員 安哲柱委員입니다.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6세 이하는 무료이고 16세 이상은 유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가가 5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원가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수가입니다. 500원은.

○安哲柱委員 일반 병원에 알았더니 한국병원에서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는데 1만원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500원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16세 이하는 무료접종을 해온 것처럼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글썽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00원을 받을 바에는 무료가 좋겠조. 하지만 지침에 의한 걸로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安哲柱委員 강북삼성병원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는 얼마인지요?

○保健所長 李星世 3,500원 입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면 500원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병원하고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이것은 보건소수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安哲柱委員 그러면 무료로 할 수 없는 거구요.

○保健所長 李星世 16세 이하가 무료이고 16세 이상은 무료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조.

○委員長 玄壽漢 또 다른 委員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본청 배정량이 200명 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료로 배정된 건지, 두번째 만일 200명 분이 초과되었을 때 약품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500원은 약품대금에 한해서만 500원이지 기타 주사료라든지 진료수당 이것은 빼고서 그냥 500원만 수수료를 받고 주사료대금이라든지 주사놓는 수수료라든지 기타의 진료 이것은 환자한테 받는지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료 있잖아요? 약품 외에.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500원에 포함된 것이 전부 주사료 내지는 진료비까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명 분을 초과할 때는 배정 신청을 더 해야죠. 저희가 지금 우선 초기니까 200명 분이 초과될 때는 저희가 다시 배정 신청을 합니다.

○**洪承台委員** 200명 분의 배정량은 무료로 받는 겁니까? 배정을 받을 때 약품대금을 여기에서 본청에다 지불해줍니까? 무료로 본청에서 시달해서 받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복지부에서 저희가 무료로 받는 겁니다.

○**洪承台委員** 200명 분이 넘으면 다시 무료로 주는 건가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추가로.

○**委員長 玄壽漢**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朴文培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李星世 保健所長님께 질의드립니다. 벌써 소련 기타 공산권 지역에 교류가 되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디프테리아가 발생한 그동안의 경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디프테리아 환자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朴文培委員** 그리고 접종수수료 500원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접종수수료는 약값을 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사 놓아주는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이것은 약품대이다 진료대, 주사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원가의 약품대입니다.

○**朴文培委員** 그러면 본 위원도 처음에 질의한 安哲柱委員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의 목적이 소위 국민의 건강, 생활 또 모든 면에 소위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고도의 민주주의 실천 과제가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소위 200명 분의 접종수수료를 500원씩 받아와야 200명이 다 발생해서 투약이 되었을 때 10만원 수수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한 명도 발생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소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을 끌어들여서 전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아무리 지치고 대통령명에 의한 보건부의 지령이라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에만 무료로 놓아주는 걸 건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所長님!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하는 사업들이 우선은 공익사업이 주로 많은 가운데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원가 책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군다나 러시아에 여행가는 여행객들이 많은 가운데 저희가 또 여권과가 신설된 그런 구가 되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昌熙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21세 이상은 1개월마다 1회씩 해서 2회 접종을 해야만 면역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세 이상되는 사람은 최소한도 디프테리아 접종에 대한 사실을 미리 삼십이삼일 전에는 알아야만 2회 접종이 끝나고서 출국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여행자들이 사실상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권과가 있는 부서에 홍보 유인물을 배부

를 함과 동시에 지역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에도 저희가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니까 영문으로 된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면 일단 출국이 금지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벌써 발병이 되면 치사율이 23%나 되는 아주 위험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출국이 허용이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법정 전염병 가운데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전염병은 어떠한 어떤 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고, 일부 최소한의 수가를 받으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전염병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저희가 6세, 그러니까 영유아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주로 1년6개월까지는 기초접종을 주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디프테리아라든지 파상풍, 백일해 또 간염 접종, 그 다음에 볼거리, 풍진, 홍역 접종을 주로 무료로 하는 겁니다. 유료접종은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간염, 장티프스가 유료접종입니다.

○**丁昌熙委員** 얼마씩 수가를 받고 있죠?

○**保健所長 李星世** 장티프스가 지금 경구용으로써 5,500원이고 간염도 5,500원, 유행성 출혈열이 7,700원으로 제일 고가의 수가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어차피 수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수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게 500원 받음으로써 야기되는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돈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근무시간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실지 원가가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安哲柱委員님이나 朴文培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16세 미만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료접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규칙을 바꿔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래서 우선 丁委員님 말씀처럼 정말 저희 생각도 사실은 이게 무료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저

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서 거기에 또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丁昌熙委員** 우선 무료 수가로 진행을 하다가.

○**保健所長 李星世** 아니죠. 보건복지부 유료 수가로 시행해보다가 문제점이 도출될 때에는 한번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丁昌熙委員**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지금 현재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16세부터는 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保健所長 李星世** 그러니까 대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P.T를 저희가 주로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린 시기에 감염이 잘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린 시기에 놓는 기본 접종이고 그래서 16세 이상은 그때는 접종을 안하고 있죠.

○**丁昌熙委員** 지금 현재 어차피 독립국가연합 지역에 동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디프테리아 접종은 필수적으로 독립국가연합을 위시로 해서 발병 국가에는 필연적으로 사전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령의 제한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규칙상 규정상 16세 미만에는 무료접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데 16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접종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해야만 유료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가를 500원으로 할 것이냐, 무료로 할 것인가, 일부 조정해서 통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글썽요. 이것은 아마 공통적인 복지부의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마다 동일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지침에 따라서 해보다가.

○**丁昌熙委員** 지금 행정이 물론 최소한의 원가를 받아서 재정자립도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구민에 대한 질적인 향상으로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만 되는 행정을 우리 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500원을 수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정 소요가 500원을 안받는 것하고 받는 것하고 할 적에

500원 받는 게 더 번거롭고 더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500원을 받는 그런 행정은 차라리 안받고 구민에 대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종로구에 심을 수 있는 방향이 최소한의 지금 200명 분이라고 하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1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타구에 비해서 종로구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타구에 앞서서 한다는 그런 평가를 부분적으로 인식을 심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걸로 해서 타구에 사는 주민이 종로구로 거주지를 변경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 종로가 조금 앞서가는 방향에서 지금 조순 시장님이 경영마인드를 시정이나 구정에 도입하겠다는 결의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0원을 수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기본적인 행정소요의 원가 계산이 미흡하다고 하면 무료로 하는 것이 차라리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丁昌熙委員! 保健所長님한테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丁昌熙委員 되었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또 질의하실委員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承台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承台委員 洪承台委員입니다. 지금 여기 디프테리아 접종은 현재 11군데에서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내 전체에서 11군데죠? 그러면 종로구에서 접종했을 때 동대문구도 올 수 있고 노원구도 올 수 있고 중구도 와서 접종을 할 수 있죠? 종로구 주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洪承台委員 법정 전염병 무료접종은 6세 미만만 하나요? 모든 것이 복지부에서 유아에게만 놓아주게끔 되어 있죠?

○保健所長 李星世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전염병은 주로 전에도 말씀을 언급했지만 D.P.T 같은 것 또 파상풍, 백일해, 볼거리 또 간염 이런 전염병이 있는 질환일수록 많이 하지만 또 그외에도...

○洪承台委員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런 모든 것이 어린이 유아한테 무료로 놓아주는 복지부의 어떤 법적인 기준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16세 이상은 그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500원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모법에 의해서 아마 500원을 수수료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런 것도 내포된다고 생각합니다.

○洪承台委員 제가 보기에는 주사대값, 증류수대, 알콜대 이렇게 다 하면 사실은 500원을 받더라도 무료나 마찬가지로 되겠죠?

○保健所長 李星世 거의 그렇지요.

○洪承台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200명 분 외에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은 무료로 받는다고 했죠? 200명 분을 배정받을 때는 무료로 100명이고 1,000명이고.

○保健所長 李星世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료로 받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丁昌熙委員! 질의하세요.

○丁昌熙委員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이 타구에서도 아마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6세 미만은 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건 타구 보건소도 기존적으로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로구에 여권과가 생겼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住民이 여권 발급을 하러 와서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접종할 대상자가 다소 타구에 비해서는 늘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종로구민이 접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지 않지요. 우선은 여행가는 어떤 일반인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丁昌熙委員 물론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종로구민이 대부분 오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保健所長 李星世 네.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丁昌熙委員 왜냐하면 타구의 보건소도 어차피 지금 유료 접종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접종 시약이 보급이 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保健所長 李星世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副議長님 질문 가운데 11개 보건소에만 국한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마치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종로구에 와서 디프테리아

접종을 할 그런 상황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많음)

異議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保健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 35分)

○委員長 玄壽漢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市民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金賢植입니다.

우리 종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玄壽漢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95.6.20자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소각, 파쇄,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소각장, 매립장 등은 해당이 없으나, 간이소각로가 관련이 있으며, 현재 관내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1항의 과태료처분규정에 법 제63조제1항5호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소각, 파쇄, 매립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토록 하여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 10.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제안사유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중개정규칙: '95.6.20)로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 권한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과태료처분통지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를 포함시켜 구청장이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제63조제1항제5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1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①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의1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委員長 玄壽漢 金賢植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5년 10월 18일 鍾路區廳長이 提出한 서울특별시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 배경은 市長 권한 중에서 일부가 區廳長에게 추가 위임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기존 조례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9조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종전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1개를 더 추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골자는 종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과태료 처분대상 중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事項이 되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1호부터 4호, 7호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끔 위반사항 5개를 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기존 5개에서 5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이행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100만원 과태료에 처하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 2, 3, 4, 5, 7만 연기가 되고 6호는 빠졌습

니다만 6호는 특별폐기물 처리업자 대상 기록 미이행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권한위임이 안된 사항이어서 개정이 안됐습니다.

다음 관련법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설정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폐유, 분진, 농약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이외의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전체를 일반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처리 방법입니다. 일반폐기물은 구청장은 일반폐기물 관리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區廳長이 처리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정한 특정폐기물 처리 방법입니다.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은 첫번째가 매립시설, 둘째가 소각시설, 셋째가 압축 및 폐쇄시설, 넷째가 퇴비화시설이 되

졌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20조입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정한 과태료 규제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항은 무단투기, 2항은 분리수거를 미이행했을 경우에, 3항은 배출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4항은 업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5항은 처리시설을 사용토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6항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의 기록 보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7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의 기록 보존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중에서 6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항은 전부 區廳長에게 위임이 되어서 금번 조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58조입니다.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징수 절차입니다.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20일자 서울특별시규칙 제2700호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20조제2항, 20조제3항이 이번의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95년 6월 20일자 시장 권한의 위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以上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朴文培委員! 질의하세요.

○朴文培委員 朴文培委員입니다. 폐기물 분리수거 이후에 불이행으로 적발 고지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를 한번 局長님! 말씀해 주세요.

○市民局長 金賢植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총 964건에 6,852만 5,000원을 부과 징수해서 현재 높은 실적을 올리

고 있습니다.

○朴文培委員 부수적으로 소위 말하는 위반 단속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현재 구에서 기동단속반을 2개 반 운영을 하고 있고 각 동별로도 동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千相旭委員! 질의하세요.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여기 案에 말이지요, 제안사유가 있고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에 보면 과태료 처분 통지 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5호를 포함시켜 區廳長이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여기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제5호를 보니까 이것은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인데 專門委員 검토보고에는 특정폐기물은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안돼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이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도 그 시설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봐서는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 미이행은 63조제1항5호에 해당되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폐기물은 제1항6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千相旭委員 20조제3항 또는 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8조제3항을 봐주십시오. 28조제3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당해 시설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8조제3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 제28조3항은 일반폐기물 사항이 아니고 특정폐기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이 특정폐기물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아니지요.

○千相旭委員 이 법조문을 봐서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63조제1항5호에는 5호 내용이 제20조제3항 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23조제3항은 일반 폐기물에 관한 내용이고 28조제3항은 특정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 그러니까 둘 다 포함이 된다 이거지요?

○清掃課長 姜漢洙 그래서 금번 추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개정안 자체가 특정폐기물에 관한 것은 아직 환경부에서 권한위임이 되지 않았고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한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니까 주요골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주요골자에 63조제5항에는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법률 해석이 상당히 미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호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 대해서 구의 조례는 우리 구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앞으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의 지침이 구에 위임될 때 추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이게 상위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이거는 저희들이 법률 해석상에 千委員님하고 상이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모법상에는 그대로 되어 있지만 내무부 위임이 안된 사항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千相旭委員 그렇게 해석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이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는 구에서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환경처에서 내려온 사항같은데 환경처에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63조 제1항 5호를 포함시킨다고 했으면 그것을 분리시켜서 5호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킨다고 해야 되는데 5호를 보면 분명히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분리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 특정폐기물에 관해서 규제를 할 게 있습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3조제1항5호 내용을 보면 제20조3항 또

는 제2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이지요. 그러면 20조3항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폐기물에 관한 사항 28조3항 규정을 보면 그 사항이 특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63조제1항5호에 규정된 20조제3항 또는 28조제3항의 규정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상으로 볼 때 지금 20조3항은 권한 위임이 區廳長한테 되어 있지만 28조제3항은 아직 권한위임이 되지 않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요골자를 끼워넣을 때, 기록할 때 이 내용까지를 기록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이거는 법조문이기에 때문에 이것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千相旭委員 이게 말이지요, 그건 課長님께서 임의대로 임의 구분한 겁니다. 나는 여기 주요골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을 이번 조례개정하는데 63조제1항제5호를 포함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포함시키는 것이 그 주요골자가 됩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그 골자 내용을 보면 특정폐기물도 시설물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대로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課長님 임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법리 해석을 제가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주요골자 내용을 보시면 과태료 처분 통지 내용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5호를 포함시켜 區廳長이 사용개시 신고를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시설을 사용한 데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런데 5호를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清掃課長 姜漢洙 5호 중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區廳長이 사용개시 신고를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용어를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千相旭委員 課長님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법률 해석에?

○清掃課長 姜漢洙 네.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네. 吳錦南委員!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분리수거 미이행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측정해서 100만원 이하, 30, 50, 70만원이든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조례 규정에 의하면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세분되어 가지고 과태료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무단투기의 경우는 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무단투기하는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를 들면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까만 봉투에 내용을 경우에 하나를 내용을 경우에 10만원, 두 개를 내용을 경우에는 20만원 이런 게 아니고 한 건에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크든 작든 1건에요?

○清掃課長 姜漢洙 네.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나 분리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清掃課長 姜漢洙 지난 11월부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여러 차례 공공연하게 마스크를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일부 주민은 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종량제가 생긴 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이라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것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해나갈 것입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각 동 주민들의 의향을 제가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태료 문제라든가 분리수거는 알고 있지만 과태료가 너무 많이 징수가 된다고 하고 또 본의아니게 바로 집 앞, 문 앞에 내놔는데 그것도 잘못 부과했다 해서 민원의 대상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朴文培委員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액이 6,800여 만원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액수가 전부 환수가 되어 있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금년 1월달부터 어제까지 실적은 964건에 6,85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한 과태료 금액이 무단투기의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5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6,

852만 5,000원을 부과했는데 지금 징수된 실적은 약 30% 수준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쉽게 수긍하지 아니하고 납부를 잘 안하는 실정입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그게 홍보 미숙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저희들은 지난 10월달 동안 충분히 홍보를 해왔다고 봐지고 각종 반사회 유인물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되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물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현재 육천팔백여 만원에서 30%가 지금 완수가 되었고 나머지 액수는 어떤 방법으로써 처리해 나갈 생각으로 계십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계속 징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시세와 같이 처분규정에 따라서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칠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가능한 민원의 소지가 안되도록 철저히 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委員長!」하는 위원 있음)

예, 朴鍾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지금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 매립시설, 소각시설, 압축물 파쇄시설, 퇴비화시설이 있는데 우리 종로구에도 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清掃課長 姜漢洙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는 매립장, 소각장 이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소각로가 열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빌딩이라든지 학교 같은 데에 열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朴鍾植委員 퇴비화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퇴비화시설 같은 것은 앞으로 만들 의사 같은 것은 없나요?

○清掃課長 姜漢洙 퇴비화시설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 시에서 시범적으로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모델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사실상 퇴비화가 곤란하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준비했던 예산을 거의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비화시설에 관한 전형적인 모델이 개발될 때까지는 각 구청에서 손을 안댔으면 좋겠다는 시본청의 방침입니다.

○**朴鍾植委員** 이번 조례안하고는 별도 질의입니다마는 작년 구정질의 때도 내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빈병이나 폐기물을 잔뜩 분리해서 쌓아놔도 그것을 누가 가져가질 않아요. 우리 마당에도 리어카로 한 대 분도 더 있고, 새마을 부녀회원들에게도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것을 부인네들이 리어카에 싣고서 세 군데, 네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냥 헐값으로 만몇천원을 받고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작년에 구정질의할 때는 이중가격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빈병 같은 것은 100원에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이나 필요한 회사에다 싸게 준다면 100원만 해준다면 길거리에 떨어져있는 폐기물도 다 주워잡니다. 그런데 빈병에 보면 50원 준다고 했는데 구멍가게에 가면 50원이 아니라 20원, 30원도 안줘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폐기물을 쌓아놔서 공짜로 가져가라고 해도 잘 안가져가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근본적인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내에서 청소과에서 수거를 안하고 대행해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또 아울러서 대행업체에서 수행을 함에 있어서 특히 가정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업소같은 데에는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는 미화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규격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공직자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洪起瑞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대행업체는 현재 3개 업체가 대행업체로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에서 아울러 조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1일 배출량이 직영하는 곳이 1일 한 177.6t이고 대행업체가 하는 곳이 205.9t입니다. 자가수거하는 것이 4.5t이래서 1일 380t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 수수료 수금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속해서 지원계획이라든지 대행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더욱더 노력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千相旭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千相旭委員** 千相旭委員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 뿐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그렇습니다.

○**千相旭委員** 특정폐기물은 단속할 수 없습니까? 전혀.

○**市民局長 金賢植** 아까 말씀올린 대로 위임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러면 동절기가 되면 자동차의 냉각수도 교체해야 되고 그것도 특정폐기물 같은데, 폐유 같은 것, 엔진오일도 폐유 아닙니까? 폐석면, 분진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폐기물은 말이죠, 무단투기했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 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에도 파에 분리가 있습니다. 청소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가 있어서 이런 공해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환경과에서도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할 것이 아닙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현재 법상에 특정폐기물 규정에는 준용이 없어서 청소과는 못하지만 공해관계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千相旭委員**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玄壽漢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일반폐기물을 만약에 무단투기하게 되면 그때 색출을 못하고 발굴 못했을 경우에는 범칙금도 부과를 못하고 나중에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보면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다 이야기해도 처리할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清掃課長 姜漢洙 실무적인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주민들이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쓰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심코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물에서 누가 버렸는지를 저희가 뒤져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발달해서 전혀 그런 것이 표가 안나게 버리는 그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면 누가 버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한없이 방치해놓을 수는 없지만 일정기간 동안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위치에도 '이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이므로 수거할 수 없습니다. 시정해서 다시 배출해 주십시오.'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래도 물론 그들이 가져가기를 기대하고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며칠 했다가 저희가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鄭泰淳委員 지역에서 보면 그런 것이 유사한 사례가 많은데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이웃에서는 동사무소에다 얘기해도 시정이 안되면 議員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가서 하게 되면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

○清掃課長 姜漢洙 근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쓰지 않고 규격봉투를 안쓰는 자체는 쓰레기 요금을 포탈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鄭泰淳委員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발이 안된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치웁니까? 지역민원에서 보면 그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이 무척 많아서 그런지.

○清掃課長 姜漢洙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된 지 1년이 채 안되는 상태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점차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밀고 나갈 겁

니다.

○鄭泰淳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昌熙委員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昌熙委員 丁昌熙委員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는 데가 10개 대형빌딩이나 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제작회사하고 규격을 나중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일단 점검 결과 안전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공해방지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된 시설물로 판정이 된 것입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현재 소각로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를 줄인다는 것이 환경보호 측면이나 우리 종로구의 열악한 재정상 쓰레기 운반 체제에 대한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그 동에 있는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입지를 선정해서 환경에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각로 운영을 검토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소각로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야 되는 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 가운데 압축이나 파쇄시설을 갖춘다는 지역시도 이것은 굉장히 구정에 도움이 되는 시설물 운영입니다. 지금 퇴비화시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인데 이런 것이 개인이 하는 데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성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금을 주고 이렇게 장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신고 안한다든가 어떤 조그마한 사유가 있을 적에 벌칙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독지가나 단체에 앞으로 이런 의욕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도 파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丁昌熙委員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소각로 설치문제는 여러 議員님들의 의견을 많이 받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설치와 무단투기,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국장으로서는 丁委員님 생각에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한 지가 10개월 보름째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한 걸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저희 국민운동단체나 직능단체가 홍보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거의가 무단투기가 없는데 주로, 거둬 되풀이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산비탈에 주로 다가가가 사는 이런 가구에서 이런 무단투기 행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홍보 차원으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委員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퇴비화시설 설치 운영이 곤란한 것으로 되었다는데 그 결과보고서를 국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丁昌熙委員 그러면 퇴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일반쓰레기 폐기물 수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 과정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퇴비화한 걸 판매하는 데 판로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어느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현재 가격상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종로구의 입장에서는 설치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丁昌熙委員 지금 설치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로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데에 그쪽에 군사보호지역겸 자연녹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라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의 검토도 불가능한 건 아니리라

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측에도 협조를 얻고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서 어차피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퇴비화시설 가지고서는 악취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물, 아주 농축된 공해 폐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여과해서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생산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용지가 그래도 그쪽에는 마련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인근에 주민 주택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알아는 보셨습니까?

○市民局長 金賢植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丁委員님께서 깊은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치에 있어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 委員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 설치하는 것은 다 찬성인데 자기 지역은 이유없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丁昌熙委員님! 적극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委員님들 전원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玄壽漢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서울特別市鍾路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市民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總務局長님이 한 자리에 계시니까 이 안전을 마저 다루고 점심을 하시기로 합시다.

3.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2時 20分)

○委員長 玄壽漢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鍾

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總務局長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안녕하십니까? 總務局長 吳炳漢입니다. 존경하는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께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제15조의2제1항이 개정되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가 공포됨에 따라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내용 중 ‘일비’의 용어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로 보상받은 議員이 직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로 지급한 금액은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를 보상받은 議員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직무로 인한 상해로 치료비를 먼저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과 委員님께서 議員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발의년월일 : 1995.

발 의 자 : 종로구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95.7.1 공포 (대통령령제14703호)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서울특별시종로구상해등보상금지급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함(안 제4조제1항 본문에 후단 신설).

○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함(안 제4조 제1항제3호 단서).

다.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중 “일비라”, “일비를”을 각각 “회의수당이라”, “회의수당을”로 한다.

제4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의”로 하고, 동조 제1항 3호의 단서중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을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 2 조(정의) ①(생략) 1. (생략)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생략) 제 4 조(보상금지급기준) ①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후단신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생략)	제 2 조(정의) ①(현행 제1항과 같음)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3. (현행 제3호와 같음) 제 4 조(보상금지급기준) ①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회의수당의 2.회의수당의 3.,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 ②(현행 제2항과 같음)

○委員長 玄壽漢 吳炳漢 總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1995년 10월 18일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19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종전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바뀌에 따라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또 종전에는 의원이 공무로 사망, 장애, 상해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중복하여 줄 수 없던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나 상해가 사망이나 장애로 발전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이 사망이나 장애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추어 발전적인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개정골자는 제2조와 제4조 중 ‘일비’라는 자구를 ‘회의수당’으로 자구수정하고, 제4조제1항 후단에 다음 규정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상해나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하게 된 때는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새로이 지급하되 그 금액은 상해나 장애로 기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입니다. 제1항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단서규정이 「다만 다

음 각호의 비용은 서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7월 1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보상기준입니다. 보상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의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 의원의 회의수당의 1년분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인데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의회의원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8조 보상심의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안哲柱議員님이委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청 관련 국장 1명과 보건소장,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이렇게 보상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의원의 상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대비해 참고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 상당액을,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국회의원 수당규정 제3조에 나와있는 수당입니다. 수당의 월액으로 204만 2,000원이고 임법활동비가 145만원, 특별활동비가 43만 5,000원으로 지금 월액으로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5년 7월 1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단서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단서규정은 사망, 장애, 상해 보상금은 중복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이나 장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금번에는 상해나 장애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라도 그 이후에 사망이나 장애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다시 상해나 장애나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사망 보상금액이 국회의원은 사망했을 경우에 2,450만 4,000원이고 의회 의원님은 시·도의회 의원 수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20×2해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하고는 수당에 차이가 좀 있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2호에서의 상해 치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항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법 개정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總務局長님! 關係公務員!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朴鍾植委員! 질의하세요.

○朴鍾植委員 朴鍾植委員입니다.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總務局長 吳炳漢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치료비 전체를 주고 또 그로 인해 불구가 됐을 때에는 6개월치 수당까지 주고 하는데 우리 구의원이나 국회의원이거나 다 민선으로 뽑힌 선량들인데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의 전액을 준다고 해놓고 다만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1년에 우리 회의수당이 80일을 다 잡아도 720여 만원 그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그 직무로 인해 상해의 경우 엄청난 치료비가 들어갔을 경우 720만원 이내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내가 보기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비 전액을 해주는데 여기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吳炳漢 아까 蔣昭秀 專門委員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모법에서 공무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모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거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의원님들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玄壽漢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53회 鍾路區議會 臨時會 중 제1차 市民行政委員會는 散會하고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오늘 참석하신 委員 전원은 '95년 11월 16일 11시에 이곳 소회의실에서 하는 심사보고서 채택회의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심도있게 모든 심사를 해주시고 바쁘신데도 고생하셨습니다.

以上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12時 36分 散會)

○出席議員 11名

玄壽漢	洪起瑞	安哲柱
吳錦南	千相旭	沈載得

鄭泰淳

洪承台

丁昌熙

朴鍾植

朴文培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總務局長	吳炳漢
市民局長	金賢植
保健所長	李星世
清掃課長	姜漢洙